

ILO어선원노동협약과 어선법의 어선거주설비에 대한 고찰

김육성* · 박문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운항훈련팀

A study on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and the fishing vessel's accommodation facilities standards in national fishing vessel act

Wook-sung KIM* and Moon-Gap PARK

Sea Training Division,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Busan 608-080, Korea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better reforming of fishers' onboard living conditions and proposals for preparing for ratification of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by means of making a comparison between standards on recent national fishing vessel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standards on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and Its Recommendation, 2007, ILO. For the most part of standards on national fishing vessel accommodation facilities are somewhat insufficient to satisfy the provisions in Annex III of the Convention. Considering by items on fishing vessel accommodation facilities, the standards on insect protector, noise and vibration,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lighting, persons per sleeping room, recreational facility are not provided in national law. Headroom, separation of accommodation, sleeping room floor area, mattress size, mess room, galley and food storage are partially 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In case of sanitary facilities, national standards are not 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The other side, facilities related safety of ship and crew such as emergency escape etc., are fully 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These insufficiencies caused by different types of fishing vessel depend on originality of fishing method and practices. In the comparison between equivalent tonnage about vessel's length on convention and calculated tonnage of national existing fishing vessel, the difference are 226tons about length 24m and 501tons about length 45m. For that reason, headroom, persons per sleeping room, cabin of sicker and injured, sanitary facilities may decide to use gross tonnage in place of length (L) and the alleviating measure basis of convention. But in case of standards on sanitary facilities which are in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specially in coastal fishing vessel length basis should be adopted with alleviating basis for less than length 24m.

Keywords: Standards on fishing vessels' accommodation, Accommodation facilities, Work in fishing convention

*Corresponding author: g2kws@seaman.or.kr, Tel: 82-51-620-5401, Fax: 82-51-611-0947

서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70년대를 중심으로 생산량 세계 8위의 활황기를 거쳐 1990년대 중반 이후 쇠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어업 생산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어선 어업은 자원 고갈, 어장의 축소, 조업규제의 강화, 어획 쿼터 확보 곤란 등으로 대상 어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력, 즉 어선원을 구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선에 있어서는 원양어업의 경우에 72%가 선령 21년 이상이어서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2010).

2009년도 말 현재 국적선 승선 어선원수는 총 18,286명으로 해기사 5,885명, 부원 12,401명이고, 총 어선수는 2,388척으로 원양 328척, 연근해 2,060척이고, 총 선복량은 30.1만톤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어선에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희망등록자수는 2000년도는 3,306명, 2009년도에는 961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업률은 83.9%에서 92.5%로 변화하고 있어서 극심한 선원수급의 어려움을 반증해 주고 있다. 특히 해기사의 경우는 2009년의 경우 99.0%가 취업하고 있어서 해기사 수급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2010).

전반적인 어업의 구성 요소들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어업 생산 기술의 고도화가 현재의 어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할 어선원 인력난, 고령화 및 질적 저하는 어업 생산 기술 전승의 단절은 물론 적기 출어 상실, 해난 사고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로 어선 어업의 경쟁력 약화, 특히 원양어업의 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관련 업계에서도 어선원 인력난에 의한 어선 어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업 생산 기술의 개발과 병행하여 양질의 어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승선 매

력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이러한 어선원 확보와 관련하여 어선의 근로 환경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채택한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이 있다 (A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이 협약은 8개 연안국을 포함한 10개국 비준을 발효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발효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선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선의 거주 설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어선법령과 어선원노동협약에서 규정된 기준을 비교하여 어선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과 우리나라의 어선의 거주 설비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어선원노동협약 발효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현존어선거주설비기준

우리나라 현존어선거주설비기준은 선원실과 위생제실 및 거주제실의 위치, 크기, 재질, 가구 및 비품, 진료실·병실 등의 설치, 기타 설비의 설치 등의 어선의 거주설비구역의 규격과 품질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어선설비기준 (MIFAFF Notice No. 2009-409, 2009b)의 제4편 거주·위생 및 탈출설비”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MIFAFF Notice No. 2009-406, 2009a)의 제8장 거주·위생설비”의 내용으로 하였다.

협약의 기준

ILO의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 부속서 III 제5편 거주 구역 및 식량과 2007 어선원노동권고 제3편 거주구역 (이후 협약이라 함)에서는 어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고립성과 위험성이 큼에 비하여 시설 등의 요건은 선박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호한 근로 및 생활조

건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선의 선내 거주구역이 충분한 규격과 품질을 갖추고, 어선원이 업무수행과 선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적합하게 설비되도록 거주구역에 관한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를 위한 도면의 승인, 위생과 전반적인 안전보건 및 안락한 조건을 상당히 고려한 거주구역 및 주방공간의 유지, 통풍, 난방, 냉방 및 조명,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의 경감, 침실, 식당 및 기타 거주공간의 위치, 크기, 재질, 가구 및 비품, 화장실 및 욕실을 포함한 위생설비와 충분한 온수 및 냉수의 공급, 기준미달 거주구역에 관한 불만처리를 위한 대응 절차 등의 상세한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여 회원국이 이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비차별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협약이 발효되면, 제시된 요건과 기준을 허용된 범위내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도 제재를 받게 되므로 우리나라 어선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고, 협약의 목적과 내용이 승선매력화를 위한 추진 목적과도 부합되므로 우리나라 어선의 거주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본 모델로 하였다.

협약의 적용대상 어선은 협약 발효일 이후의 신조 어선과 거주 구역을 개조하는 현존어선으로서 갑판이 있는 모든 어선이며, 어선은 그 특성이 어떠한 것이든 소유권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업적 어로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될 일체의 선박이나 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24시간 미만을 바다에서 머무르는 어선에 대하여서는 근거되는 보고서의 제출을 전제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 협약의 특징으로 어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거주구역의 규격과 품질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서양 어선의 선형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협약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특정 조항에 한정하여 총톤수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Table 1과 같이 길이 대신에 전장 (LOA)과 국제총톤수를 적용할 수 있는 동등규정을 가지고 있

Table 1. The equivalent in measurement between gross tonnage and length

International gross tonnage (ton)	Length (L) defined on convention (m)	Length overall (LOA) (m)
75	15	16.5
300	24	26.5
950	45	50.0

으며 조업방식, 관습 등의 국가간 차이를 고려하여 선원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된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전장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어선의 길이 (L)는 용골상면으로부터 측정된 최소 형깊이의 85%에 있어서의 수선상 총 길이의 96% 또는 그 수선상에 있는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선까지의 길이 중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강선의 구조기준 (국토해양부장관고시) 제2조 정의에 정의된 선박길이 (L) 및 만재흡수선 기준에 정의된 길이 (건현용길이 L)와도 일치하고 있어서 동등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총톤수에 대하여서는 협약기준은 국제총톤수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기준에 의한 총톤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동등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국내톤수로 환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이 동등규정에서 제시하는 치수는 아시아권 국가와 유럽권 국가가 공동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규정되었으나, 우리나라 현존어선의 크기와 일치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하여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소형어선 및 화물선의 복원성기준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어선의 국제총톤수와 어선의 길이 상관식 (1)을 사용하였다.

$$GT=0.0080L^{2.8726} \tag{1}$$

여기서 GT 는 국제총톤수, L 은 어선의 길이이다.

결과 및 고찰

동등규정의 검토

협약의 동등규정과 우리나라 어선의 국제총

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equivalent tonnage on convention and calculated tonnage of existing fishing vessel

Basis for measurement	Length 24 meter	Length 45 meter
Convention equivalent tonnage (ton)	300	950
Existing vessel calculated to tonnage (ton), international basis	74	449
Difference (ton)	226	501
Existing vessel calculated to tonnage (ton), national basis	45	289

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equivalent tonnage on convention and calculated tonnage of existing fishing vessel

	Gill net	Combination	Trap	Stow net	Long line
Accumulated number of operating vessel	2,358	2,091	690	299	168
Accumulated operating days	226,654	145,183	61,284	28,854	10,947
Operating days per vessel	96	69	89	96	65

톤수에 따른 어선의 길이 비교 결과는 Table 2와 같이 길이 24m 어선은 226톤, 길이 45m 어선은 501톤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소형어선 및 화물선의 복원성기준 연구 (KST, 2006)에서는, 권현망어선은 길이 20.0m가 26톤, 저인망어선은 길이 21.8m가 46톤, 채낚기어선은 길이 22.95m가 43톤, 통발어선은 길이 25.0m가 79톤, 연승어선은 길이 14.97m가 11톤과 같이 업종별로 어선의 톤수와 길이와의 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길이 기준을 국내 기준화한다면 우리나라 어선의 전통적 어법과 선형은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협약 발효의 대응 방안으로 동등 규정의 기준 적용이 가능한 설비에 대하여 선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톤수를 적용하는 것이 선형의 변화를 최소화하므로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적용 대상 어선과 어선의 크기 변화

협약의 적용 범위는 어선원이 어획물을 자가

소비로 사용할 목적의 어로를 제외한 모든 어업인 “상업적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어선이 포함된다.

연안 자망, 연안 복합, 연안 통발, 개량연안안강망, 연안 연승 어선의 연간 조업일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2009년도 연근해 조업상황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정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안 통발과 연안 연승은 69일과 65일이었고 월 평균 6-7일을 바다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항 시간이 기재된 상세한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실제 1항차 당 바다에 머무는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업종에 대해서는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협약이 발효가 되면 연근해 어선을 신조 또는 거주설비를 개조하려고 할 경우에 어선의 크기 변화 문제와 신조 경비의 증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허가 톤수 제한 법령에 따라, 거주설비의 개선을 위해 늘어나는 톤수로 인하여 신조 또는 선원 거주 구역의 개조를 포기하게 하여 근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Table 4. The comparison on accommodation facilities between National Act and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Item	National equipment standards	ILO convention compliance
Headroom*	Length under 45m : minimum 180cm Length and over 45m: minimum 190cm	Length and over 24m : minimum 200cm (after consultation, be permitted 190cm)
Separation of accommodation	Length under 45m : not applied	Applied all fishing vessel
Insulation	Applied partial fishing vessel	Applied all fishing vessel
Insect protector	Not defined	Required all practicable measures
Emergency escapes	Higher level than required	Applied all fishing vessel
Noise and vibration	No standards	Take measures for all fishing vessel, Length and over 24m required noise standards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Length under 69m : not defined	Applied all fishing vessel, Length and over 24m required system
Lighting	Not cleared standards	Required reading light, emergency lighting, emergency escape permanent night lighting. Length and over 24m required lighting standards
Sleeping room floor area*	1. Tonnage less 800ton : 1.85m ² Tonnage 800 - 3,000톤 : 2.35m ² Tonnage and over 3,000ton : 2.78m ² 2. Length less 24m : 0.55m ² Length and over 24m : 1.10m ²	• Length and over 24m - less 45m : 1.5m ² (after consultation, minimum 1.0m ²) 〈 Length and over 45m : 2.0m ² (after consultation, minimum 1.5m ²)
Person per sleeping room*	Not defined	• Length less 24m : maximum 6 person 〈 Length and over 24m : maximum 4 person (For officer : maximum 2 person)
Mattress size*	All vessel : 190cm × 70cm Not defined install desk	Length and over 24m : 198cm × 80cm (after consultation, minimum 190cm × 70cm)
Mess room*	Well defined with the exception of hot and cold drink facilities Length and over 24m	Location, separation, dimension and equipment, drink facilities, etc..
Sanitary facilities*	• Length and over 24m : toilet 1ea/30person. others not defined. 〈 Length and over 45m : toilet, wash basin, tub or shower each 1 ea/18person 〈 Length and over 60m : toilet, wash basin, tub or shower, laundry room each 1 ea/15person	• Length and over 24m : toilet, wash basin, tub or shower each 1ea/4person (after consultation, wash basin, tub or shower minimum 1 ea/6person, toilet minimum 1ea/8person) Required adequate amenities for washing and drying clothes 〈 length and over 45m : toilet, wash basin, tub or shower each 1 ea/4person. Required adequate and separated amenities for washing and drying clothes
Facilities for sicker and injured*	And over maximum complement 50person : 1 cabin	Length and over 45m : 1 cabin
Recreational facilities	No standards	Appropriate for Length and over 24m
Galley and food storage	Galley, Food storage : defined Length and over 20m refrigerator : defined 7days more navigation vessel	Galley, Food storage, refrigerator and other low-temp. storage required length and over 24m

* May be decide to use gross tonnage as the basis for measurement in accordance with the equivalence after consultation.

근해어선의 크기변화에 대하여는 길이 24m 어선의 선원침실부분에 대하여 총톤수 변화를 확인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부자료 (2008년 12월 31일 기준)에서 길이 15m에서 24m미만의 근해소형선망(양조망), 기선권현망,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연승승의 적당 평균승선원수가 8명인 것을 확인하였고, 길이 24m 이상 어선의 승선인원을 최소 8명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선원 8명에 적합한 선원침실은 Table 4와 같이 협약기준으로는 해기사 및 부원용 2인용 2실과 4인용 1실이 적절할 것이며, 이에 대해 침실의 용적을 계산하면 협의 후 완화가 가능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는 4.2m³가 증가하고 완화규정을 적용하면 오히려 0.8m³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완화규정을 채택하더라도 위생설비의 기준 강화 등으로 거주설비의 용적이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어로작업공간과 어획물의 보장시설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거주시설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어선의 길이 또는 폭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관의 출력 증가, 복원성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므로 어선원이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어선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천정 높이, 침실 바닥면적, 침대치수, 위생설비는 협약의 완화 기준 내에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어선원의 근로환경에 대한 보완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허가톤수의 제한에 따른 문제는 거주시설 등의 개선을 위해 증가하는 어선의 톤수는 허가톤수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내기준과 협약기준의 비교

국내어선설비기준을 협약의 요구기준과 비교하면 Table 4와 같다.

거주설비 각 항목에 대하여 비교 고찰을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정높이는 협약에서는 길이 24m 이상의 선박의 최저 허용 천정높이는 200cm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어선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190cm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기준은 45m 이상선박에 대하여 190cm이고, 45m 미만 선박은 180cm이다. 국내 기준 값은 2004년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에서 보고된 남성 20-24세 그룹의 평균 신장 173.8cm 보다 약 16cm의 여유가 있으나 45m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6cm의 여유 밖에 없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45m 미만 선박은 대부분 근해 어선에 해당되고 또한 톤수 규정을 적용한다면 배의길이 39m에서 45m 사이의 어선에서만 기존 천정높이 기준 1.8m에서 1.9m로 강화되게 되어서 우리나라 근해어선에는 기준강화에 따른 실제적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의 신장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서 톤수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길이 24m 이상선박에 대하여 190cm로 기준하는 것이 어선원의 거주환경 개선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다만 복원성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선박의 높이가 10cm에서 20cm가 증가하게 되어서 \overline{GM} 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복원성 유지를 위해서는 어선이 소형화 될수록 선폭을 증가시키게 됨으로서 톤수의 증가와 선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거주구역의 출입문 및 거주구역간의 문 등 선원거주시설의 다른 작업공간과의 격리에 대하여 협약에서는, 처리실(어창)과 기관실 구역으로부터 침실로 직통하는 개구부는 비상탈출용을 제외하고 없어야 하며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하다면 주방, 선용품창고, 건조실 또는 공동세면장으로 통하는 문은 직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길이 24m 이상인 선박은 처리실(어창)과 기관실 구역, 주방, 선용품창고, 건조실 또는 공동세면장으로부터 침실로 직통하는 개구부는 비상탈출용인 경우를 제외하

고 없어야 하며 이 구역들을 격벽과 외부격벽은 강판 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하고 수밀 및 가스밀이 효과적하도록 건조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 사항은 선박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국내 기준에서도 이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어선이 45m 이상인 어선에 적용하고 있어서 24m 이상 어선으로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모든 어선에 적용되는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하다는 단서는 선박의 복원성의 유지 관점과 상갑판하에 거주제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어서 24m 미만의 어선에도 복원성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와 상갑판하에 거주 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단열과 방충 등에 대하여 협약에서는 거주구역은 적절하게 단열되어져야 하고 내장재와 마루, 접합부는 목적에 적합해야하며 위생적인 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충분한 배수설비가 되어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방충이 되도록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기가 창궐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는 특별히 조치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기준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미흡하다.

따라서 거주구역 또는 선교에는 습기의 발생 또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배수와 단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재료 및 비품들은 습기가 침투하지 아니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으며 해충이 생길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 방충되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비상탈출구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준하고 있다.

소음과 진동에 대하여 협약에서는 책임당국은 가능한 한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거주구역에서 과도한 소음과 진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길이 24m 이상인 선박에 대해서, 거주구역에서 피로를 유발하는 소음과 진동의 영향을 포함하여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어선원을 적절

히 보호 하기위해 소음과 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선에 적용되는 선박설비기준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 선박의 선원실등과 선교에는 적당한 방음설비(소음치 60dB(A) 이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 및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협약에서도 상세하게 기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선의 거주구역에 대한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는 선원의 안락한 거주환경과 관련한 사항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음·진동 방지규정을 선언적으로라도 신설하여야 하고 어선 선종별로 실측에 의한 현황 및 적정한 기준치에 관한 연구를 수반하여 “소음진동 규제법”의 생활소음규제 기준(기타 사업장 소음, 주간 65dB, 야간 55dB)을 준용하는 등의 적절한 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통풍, 난방 및 냉방, 조명에 대하여서는 단열, 방충과 같이 쾌적한 거주공간의 확보를 위한 부속 장치들으로써 국내의 기준에 대체로 잘 명시되어 있고, 협약의 요구사항은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서 거주구역의 규격에 선언적 규정을 추가하고 선원실의 독서등과 비상조명의 설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여야 한다.

침실바닥면적은 톤수 기준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Table 5와 같이 톤수와 길이기준을 적절히 사용하고 완화규정을 적용할 경우 협약 요구기준을 상회하므로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협약에서는 침실당 바닥면적의 산정에 침대와 옷장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에는 바닥면적의 산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침실당 인원수는 국내에서는 선원 1인당 바닥면적을 규정하여 침실에 정원을 표시하도록 되

Table 5. The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 and national law about the floor area per person

Convention equivalence		Convention standards (m ²)		National standards (m ²)
Length basis	Tonnage basis (national tonnage)	Standard measure	Alleviating measure	
Less than 24m	Less than 300tons (180tons)	—	—	0.55
And over 24m to less than 45m	And over 300tons to less than 900tons	1.5	1.0	1.1 And over 200tons (national) 1.85
And over 45m	And over 900tons (660tons)	2.0	1.5	And over 800tons (national) 2.35

어 있고 협약에서는 각 침실당 허용 인원수가 어떠한 경우라도 6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길이 24m 이상인 어선은 4인 이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사관에게는 가능한 독립된 침실 또는 침실들을 제공해야 하며 길이 24m 이상인 어선은 1인용이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도 2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24m 이상 어선에서 선박의 크기, 선형 또는 업종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 요구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거 제시가 곤란하여 적용이 어렵다. 그리고 필요한 공간 점유의 문제는 침실 바닥면적에서 국내 기준이 협약의 요구사항에 충족되고 있으므로 선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여 어선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요구 기준을 수용하되 동등규정을 적용하여 총톤수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제총톤수 300톤 미만 어선은 최대수용인원을 6인으로 하고 그 이상의 선박에는 4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사관침실의 경우는 당직교대의 측면에서는 2인 1실의 구조가 바람직 할 수도 있으므로 어선내의 전통적 관습을 고려하여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시의 병실로의 대체 등을 감안하여 3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1인 1실을 최소한 1개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총톤수 300톤은 국내톤 약 180톤에 해당하므로 근해어선은 대부분 선원실 6인 이하, 사관실 2인 이하가 될 것이다.

침대규격은 국내 기준이 어선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않고 있으며, 천정 높이 등과 같이 완화기준을 채택한다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침대규격에 부수하여 의자가 딸린 책상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책상이 차지하는 면적이 옷장과는 달리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24m 부근의 길이를 가지는 국내 어선에서 책상을 설치할 경우 실제 선원의 거주 편리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톤수 기준을 채택하여 국내톤수 180톤 이상의 어선에 책상을 설치하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협약에서 가능한 한 침실거주구역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남녀 사생활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명화 할 필요가 있다.

식당과 오락시설은 침실과 같이 거주 생활환경의 중요한 요소이나 국내 기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식당에 대한 협약의 요구사항은 배의 길이 24m 이상의 어선에는 선원실과 분리되어 있고 조리실 가까이에 위치하는 식당, 그 외의 어선에는 가능한 한 침실구역에서 분리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식당에 비치하여 선원이 상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정원이 있는 식탁과 의자 또는 좌석을 기본으로 하여서 길이 24m 이상인 선박에 대해서는 충분한 용량의 냉장고와 냉·온의 음료 제공설비가 비치되어야 한다. 오락 시설에 대해서는 배의 길이 24m 이상의 어선에는 적절한 오락 및 문화시설을 설치해야하고 적합한 경우 식당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의 권고 사

항에 표시된 오락 및 문화시설은 가능한 한 독립된 흡연실,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실, 영화 또는 비디오 상영(수량은 항해기간 동안 상영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로 교체), 체력단련 기구, 테이블 게임 및 갑판에서 하는 게임용 운동 기구, 전문 도서 및 기타 도서를 비치한 책장(책의 수량은 항해기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로 교체), 취미, 수공예를 위한 시설, 라디오, TV, 비디오, DVD/CD 플레이어, PC 및 소프트웨어 및 카세트테이프레코더 등과 같은 전자제품이 있다. 국내 기준은 대체로 식당의 규모에 대해서는 잘 기준되어 있으나 상용할 수 있는 냉온음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고 있어서 기준을 보완하여야 하고 오락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서 협약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

조리시설은 국내 기준이 상세하고 상회하나 식품저장시설을 식품창고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길이 24m 이상의 어선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생설비에 대해서 협약에서는 욕조 또는 샤워기, 화장실 및 세면기, 세탁시설로 구분하여 다른 항목에 비하여 많은 요구사항을 두고 있다. 국내 기준은 욕실·세탁실 등의 설치에서 Table 4와 같이 협약의 요구사항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선원이 많은 어선에서는 완화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하여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위생 설비 등의 개수에 대해서는 협약의 요구사항과 대부분 부합되지 않으며 선원들이 특히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협약에서는 톤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완화 기준도 있는데 연근해어선에서 톤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협약이 요구하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특히 열악한 연근해 어선의 개선을 고려하면 길이 기준을 수용하여 개선의 범위를 넓히되 완화기준을 채택하여 크기 변화 및 선주의 경비부

담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경우 길이 24m미만에 대해서는 완화 기준을, 길이 24m이상에 대해서는 요구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그 이외에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위생설비품의 보건 및 위생의 최저 기준과 합리적인 품질의 기준, 냉·온의 청수 사용에 관한 규정, 위생설비의 격리, 환기 장치에 대한 기준, 위생 시설의 바닥 및 표면에 대한 기준들의 제정이 있다.

세탁시설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이 없어 요구 기준을 반영하되 다른 위생시설의 확장으로 늘어나는 크기 변화를 감안하고 선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톤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협약에서는 질병 및 상해 어선원을 위한 시설과 육상과의 원활한 개인 통신을 위한 통신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고 병실의 설치문제는 어선의 크기변화 등을 감안하여 톤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내 기준은 최대 승선인원을 기준하고 있어서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

결 론

어선원의 선내 생활공간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국제적 기준인 국제노동기구(ILO)의 2007년 어선원 노동 협약이 채택되어 어선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것은 극심한 어선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어업의 곤란을 타개할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거주구역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적용은 첫째 어선의 크기를 길이로, 둘째 천정높이, 침실 바닥면적, 침실수용인원, 침대치수 및 위생설비 숫자 등에 대해서는 국제총톤수와 길이 중 하나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선법령에서 규정한 어선 거주 설비는 협약 요구 기준에 대부분 미흡하므로 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관련 어선법령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협약의 동등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현존 어선의 길이를 국제총톤수로 환산한 값과 협약의 동등 규정 국제총톤수와 차이가 매우 크므로 어선원의 생활환경 개선 등 근로 조건만을 고려한다면 톤수 기준에 의한 규정 적용을 배제해야 하나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규모와 전통적 선형의 유지를 위해서는 동등 규정을 설비별로 적절히 적용하고 또한 노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특히 침실수용인원과 위생설비 부분의 기준은 국내 기준이 매우 열악하므로 협약의 길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현행 국내 기준을 대부분 상회하고 있고 선원실과 거주제실은 총톤수 측정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따라 총톤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자원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으로 어선의 톤수를 제한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신조 또는 거주구역의 개조를 통한 어선원 거주설비 개선이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어선의 어획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선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협약의 기준을 수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총톤수 증가와 어선의 복원성 변화에 따른 선형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Go, C.D. and S.H. Kim, 2003. Evalua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s on board in term of noise and vibration in coastal small-sized ships.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27 (1), pp. 15 – 30.
- Jung, D.Y. and M.G. Park, 2007. Work in fishing convention (No. 188) and it's recommendation (No.199), 2007. Dasom, Busan, pp. 1 – 125.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4. The 5th size korea,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 pp. 90.
-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KST), 2006. A study on stability standards of small fishing or cargo vessel.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FAFF), pp. 93 – 132.
-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2010.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2010,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pp. 48, 158, 177, 179.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FAFF) Notice No. 2009-406, 2009a, A standards on small fishing vessel's structure and facilities. pp. 34.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FAFF) Notice No. 2009-409, 2009b, A standards on fishing vessel's facilities. pp. 95 – 120.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FAFF), 2009.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tatistical yearbook 2009, pp. 275.
- The state of operating of inshore fishing vessel statistical year book (2004-2008),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pp. 281 – 333.

2010년 10월 26일 접수
 2010년 11월 10일 1차 수정
 2010년 11월 10일 수리